

1. 개정이유

「전기사업법」 개정에 따라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전기신사업 중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접수 업무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개정하며, 관련 별지 서식 개정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접수 업무를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 및 한국전력거래소 생략문구 수정(안 제7조의2, 제17조의2)
- 나. 한전·전력거래소·사업자 간 시간대별 전력량 정보제공, 전기신사업 신청 등 원활한 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사항 규정 (안 제17조의7, [별지 제5호의2서식], [별지 제5호의3서식], [별지 제8호의3서식], [별지 제13호의2서식]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관계부처 협의 예정
- 라. 기 타 :

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전기신사업 중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의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“지능형전력망 협회”를 법 제35조에 따른 “한국전력거래소”(이하 “한국전력거래소”라 한다)로 한다.

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한국전력거래소(이하 “한국전력거래소”라 한다)”를 “한국전력거래소”로 한다.

제1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7조의7(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) ① 송전제약 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에 따라 송전제약으로 발전설비의 최적 활용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당해 발전설비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신규 시설인 전기사용자의 수전설비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「전력시장운영규칙」에 따른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.
- ②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,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.

1.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시간대별 발전량
 2.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
 3. 그 밖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특정 당사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거나, 다른 전기사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것.
-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5에 따른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별지 제5호의2서식 중 등록신청 내역의 전기신사업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전기신사업 종류		
<input type="checkbox"/> 전기자동차충전사업	<input type="checkbox"/> 소규모전력증개사업	<input type="checkbox"/>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
<input type="checkbox"/> 통합발전소사업	<input type="checkbox"/>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	
<input type="checkbox"/>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		

별지 제5호의3서식 중 “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”을 각각 “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,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”으로 한다.

별지 제8호의3서식 중 신고인의 전기신사업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전기신사업 종류		
<input type="checkbox"/> 전기자동차충전사업	<input type="checkbox"/> 소규모전력증개사업	<input type="checkbox"/>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
<input type="checkbox"/> 통합발전소사업	<input type="checkbox"/>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	
<input type="checkbox"/>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		

별지 제13호의2서식 중 신고인의 전기신사업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

다.

전기신사업 종류

-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증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
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
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는 법 제16조의5에 따라 송전제약으로 발전설비의 최적 활용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당해 발전설비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신규 시설인 전기사용자의 수전설비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「전력시장운영규칙」에 따른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.

②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,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.

1.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시간대별 발전량
2.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
3. 그 밖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특정 당사자에게 과도한 경

제적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거나, 다른 전기사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이 초래되지 않도록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5에 따른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